



#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광고 모니터링 관련 협조 요청

1.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도모를 위한 귀 협회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소지 사례 및 적극적 모니터링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정리하여 송부드리오니, 유사사안에 대하여 관련 의료법령상 준수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 < '19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우리부 입장 >

연번	지적사항	우리부 입장
1	성형앱을 통한 환자 DB거래의 위법성	의료법령 위반 소지(환자 유인·알선)가 있다는 유권해석 및 회신 완료
2	필러제품을 오프라벨로 사용하는 시술광고의 의료법령 위반 여부	부작용 정보 누락, 객관적 사실의 과장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령 위반소지

3. 또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각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의 내실있는 운영 및 귀 협회 관련 각 기구 및 조직의 적극적인 의료광고 모니터링 역시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의료법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의료광고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령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안 또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 의사협회장

---

주무관 김세은 사회복지사무관 박재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정경실 전결 2019. 11. 5.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449 (2019. 11. 7.)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10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09 팩스번호 044-202-3903 / [eunkim@korea.kr](mailto:eunkim@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